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5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육부장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제1항)	2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5조제2항 신설)	7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8조제3항 신설)	1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나. 제 출 일 : 2025. 12. 23.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부장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① ----- ----- ----- ----- ----- ----- ----- <u>. 다만, 제8호의2에 관한 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u>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u>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시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계획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이와 별도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반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작성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²⁾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³⁾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교육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의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반면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주기가 6/3/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교육과정은 6년 또는 7년 주기로 수정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과 교육과정 수립 주기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4)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10년)
 -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11년)
 -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9년)
 - 제4차 교육과정: 1981~1988(8년)
 - 제5차 교육과정: 1989~1992(5년)
 -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6년)
 -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11년)
- 수시개정 시기: 2007, 2009, 2015, 2022
※출처: NICE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매년 수립하고 시행 중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이 존재하는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각 부처 소관업무에 대한 충돌 또는 중복을 야기할 수 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교육부장관의 법정계획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한 신설인바, 계획수립 주체인 교육부와 교육과정 수립 주체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과정 관련 사무의 소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이고, 개정안의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가교육과정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현행법 제6조제1항제5호5)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중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교육 관련 법령상 교육부소관 사무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아울러, 대구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학교예술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제도적으로 안정화된바 법률 차원의 추가적인 규정은 계획간 정합성 확보 및 추진체계의 모호성을 야기해 교육현장의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미 교육부장관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학교예술교육은 공교육으로서 현행과 같이 교육부 및 교육청 중심의 체계 유지가 필요하고, 부처간 협력은 별도의 협의체계를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5조 제2항 신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법 제5조의2⁶⁾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⁷⁾ 및 제15조의2⁸⁾에서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등과 학교예술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교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 제5조의2, 제15조 등에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주요 내용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의무에 대한 신설이므로, 관계기관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및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15조 제2항의 내용이 중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서 타 부처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부처 간 권한 침해 소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개정안이 대통령령을 통해 의무사항이 구체화되므로 법률상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임을 고려할 때, 교육 관계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아울러, 대구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고유 책무로 규정되어 수행되고 있어 입법상 중복이 우려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운영·평가·환류 책임자이나, 동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교육감을 외부의 지원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8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② (생략) <신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 제18조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 교육단체¹⁰⁾를 연계·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의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수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한편, 대구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기존 학교예술교육 정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행정에 혼선이 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0